



관세청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HS 2022 개정에 따른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」 통보

1. 한-중 FTA 제4차 관세위원회('22.1.13) 합의 결과에 따라 「HS 2022 개정에 따른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」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, 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각 세관,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수출입기업, 관세사 등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

- 1) 제9란: HS 2022에 따른 물품의 HS번호 6단위 기재
- 2) 제10란: HS 2012에 기초한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기재

나. 시행일: 2022.1.25(화)

※ 이 지침 시행에 따라 「HS 2017 개정에 따른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」은 폐지하며, 2022.1.1. 이후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8항에 따라 정정발급 하는 경우에도 적용. 끝.

